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4. 금(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9.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84호)

나. 회부일자: 2023. 2.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3. 2.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가족의 종합적·개별적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적·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29, 3층
- 규 모 : 약 115㎡(상담실, 사무실, 소회의실 등)

- 인 력 : 5인 (센터장 1(무보수), 직원 4)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결
- 위탁사무의 범위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운영
 - 동료상담 및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
 - 우리구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프로그램,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03.15.자로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상담·교육사업, 장애인가족의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도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위탁대상 및 주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

(단위 : 천원)

소재지	시설현황	사업비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조직
종암로129 (3층)	면적: 115㎡, - 보증금 15백만원 - 월 1,210천원	266,658천원 (시106,321천원, 구160,337천원) - 인건비 137,780천원 - 운영비 23,341천원 - 사업비 91,017천원 - 임차료 14,520천원	2020.3.16. ~ 2023.3.15. (3년) 최초 위탁	(사)성북구 장애인단체 연합회	5명 - 센터장 1 - 직 원 4

<주요사업>

세부사업명 (프로그램)	주요내용
상담 및 사례관리	- 초기상담, 일반상담, 위기가족관리, 전문기관 연계, 솔루션위원회, 동료상담가 파견, 동료상담가 간담회 등
가족역량강화	- 부모교육, 자조모임(부,모, 비장애인 형제자매, 장애인가족),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네트워크 회의, 돌봄기관 업무협약, 운영위원회
동행특화사업	- 동행사업(병원진료, 장애(재)판정 지원 등), 상담 등
홍 보	-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홍보물 제작 등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¹⁾에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제2항²⁾규정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지원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기관(단체)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간으로의 위탁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³⁾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1)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
 6.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1.(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9.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85호)
- 나. 회부일자: 2023. 2. 13.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2.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미래의 주역인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동주택 관리동에 현재 운영 중인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통한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와 기존에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에 만료되는 시설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신규위탁 대상 :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정릉햇살가득 어린이집)
 -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체 선정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2항에 따라 기존 설치·운영자에게 최초 운영권 보장

○ 재위탁 대상 : 은성어린이집 등 3개소

- 위탁체 선정 :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여부 결정(2023.09예정)

○ 위탁사무의 범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첫째, 정릉1동 대림e-편한세상2차아파트 내 정릉햇살가득 어린이집이 2023년 3월 국공립으로 전환(2022년 6월 제2차 서울시 국공립확충심의 승인)예정임에 따라 현 설치 운영자에게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려는 것이며,

○ 둘째,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중 은성 어린이집 등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하려는 것임. 위탁대상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신규 및 재위탁대상 시설현황〉

연번	시설명(원장)	소재지(행정동)	현 위탁체(대표)	정원/현원	비고
신규	정릉햇살가득 어린이집	북악산로 851 관리동 1층 (정릉1동)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전환	29	2023년 3월 국공립으로 전환 하여 개원 예정
재위 탁	은성 어린이집 (우 지 혜)	종암로24가길 80 106-101 (종암동)	개인 (우 지 혜)	20/20	구 소유 (2018.11.매입)
재위 탁	정릉제일 어린이집 (박 민 정)	정릉로31가길 46 (정릉4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정릉제일교회 (김 기 남)	40/34	구 소유 (2018.11.매입)
재위 탁	종암중앙 어린이집 (이 유 진)	종암로19길 18 (종암동)	대한예수교장로회 종암중앙교회 (조 성 환)	75/58	무상사용협약 (2014.3.1.~2028.2.28.)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 「영유아 보육법」 제12조제1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이하 “보육조례”) 제13조제1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 8의2⁴⁾, 「보육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 으므로 적법함.
-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는 국공립 전환 신규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 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므로 공개경쟁이 아닌 기존 운영자에게 운영권보 장이 가능하며,

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 재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및 「보육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 한하여 재위탁 하는 경우 이므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 판단됨.

<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라.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1.(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9.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86호)

나. 회부일자: 2023. 2.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2.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남수 복지교육국장)

가. 제안이유

-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단계의 아동의 돌봄공백 해소 및 방과후 “놀이”와 “쉽”을 통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시립거점형키움센터를 포함하여 12개소가 운영되고 있음.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희망둥지나뭇이 인사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으로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수탁 협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 성북5호점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규 모	정 원	종사자	개소일	現)위탁기관
						협약기간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5호점	아리랑로 19다길 12 (정릉2동)	194.22 ㎡	30명	3명 (센터장포함)	'21.9.1	사단법인 희망둥지나룻
						2021.09.01~ 2026.08.31(5년)

○ 위탁기간 : 5년(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근거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함.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2023. 3월 예정)

○ 수탁자격: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 비영리법인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수탁기관으로 가능

○ 위탁사업의 범위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성북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2022.1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운영 수탁체인 사단법인

희망동지나눔이 2022년 12월 30일 협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5호점 현황〉

소재지	시설현황(㎡)	연간사업비 (2022년 기준)	위탁기간	운영주체	정원	운영조직
성북구 아리랑로 19다길 12 (정릉2동)	전용공간 194.22㎡	총 139,935천원 국비 : 17,862천원 시비 : 113,673천원 구비 : 8,400천원	2021.09.01. ~ 2026.08.31.	사단법인 희망동지 나눔 (임길호 대표)	30명	센터장 포함 3명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⁵⁾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⁶⁾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요건을 갖추고 있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업무는 타 업무와 달리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는 점에서 본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제7조⁷⁾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

5)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재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재위탁은 수탁체의 계약 해지요청에 따른 수탁자를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신규 수탁체 선정 시 수탁자의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등 신중한 검토와 위탁기준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탁체를 선정하고, 고용승계 등 철저한 인수인계로 돌봄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2.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2. 9. 임현주 의원 외 14명 발의 (의안번호 91호)
나. 회부일자: 2023. 2. 1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 2. 22.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현주 의원)

가. 제안이유

- 금연구역 범위가 좁을 경우, 간접흡연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선 경계면 10미터 구역까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3호)

다.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입법예고

- 기 간 : 2023. 02. 09. ~ 2023. 02. 14.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 개요

- 본 개정안은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계면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추가하는 것임,
- 금연구역 지정에 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직접 금연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장소⁸⁾(법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장소(법 제9조제7항)⁹⁾를 단체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위임하는 두 체계로 관리되고 있음.

나. 주요내용

- 본 개정안은 초·중·고등학교 경계면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적 조치가 이루어져 있음.

8) 법률에서 직접 규정 : 공용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학원, 공항.부두.역.터미널 등, 공연장,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동주택, 어린이집,유치원의 경계 10미터

9) 성부구 조례 규정 : 도시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

< 국민건강증진법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그러나 초·중·고교의 경우 여전히 출입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주변도 경계 기준으로 바꾸어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한편 2020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 제도개선안 주문·의결을 통해 ‘학교 등 시설 밖 금연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밖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및 초·중·고등학교 경계 밖 30미터를 법정 금연구역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초구는¹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경계면으로부터 10m이내의 구역’을 추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10) 서울시 조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서초구 조례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하며 사유지는 제외한다)

서대문구¹¹⁾는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시설의 경계면으로부터 3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재 법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경계면 반경 10m이내까지 금연구역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11) 서대문구 조례 :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우리구 금연구역 총 현황 : 10,658개 (2022년 10월 31일 기준)

구 분		금연시설 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0.31.기준)
누 계		10,527	10,480	10,485	10,566	10,658
국민건강증진법	청사	67	63	63	57	59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15	113	113	108	109
	대학교	7	7	7	7	7
	의료기관, 보건소 등	525	526	526	539	532
	어린이집	296	296	296	243	209
	청소년활동시설	9	6	6	10	10
	도서관	54	53	53	52	65
	어린이놀이시설	372	382	382	393	378
	학원	462	463	463	470	435
	교통관련시설(차량 포함)	860	845	845	833	833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412	413	413	327	225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1000㎡이상)	140	145	145	256	357
	공연장	4	4	4	2	4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11	11	11	11	9
	관광숙박업소	7	5	5	5	4
	체육시설업	378	373	373	378	423
	사회복지시설	247	276	276	285	316
	목욕장	32	29	29	26	24
	게임제공업소(PC방 등)	166	155	155	113	87
	음식점	5,053	5,067	5,065	5,239	5,379
	만화대여업소	9	9	9	8	8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	-	-	-
	공동주택	2	4	11	14	17
	유치원 10m 이내	-	50	50	46	46
	어린이집 10m 이내	-	296	296	243	209
	소 계	9,228	9,591	9,596	9,665	9,745
서울시 조례	중앙버스차로	10	10	10	10	10
	지하철출입구	63	63	63	63	63
	소 계	73	73	73	73	73
성북구 조례	도시공원	47	48	48	53	61
	버스정류소(마을버스 포함)	737	616	616	628	632
	거리	3	3	3	3	3
	통학로	-	2	2	2	2
	하천	2	4	4	4	4
	학교절대정화구역(유치원, 초·중·고등학교 50m)	115	113	113	108	108
	전통시장(돈암, 장위전통, 돌곶이 시장)	-	3	3	3	3
	지역아동센터 10m (2019년부터)	-	27	27	27	27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10m(2018년까지)	322	-	-	-	-
	소 계	1,226	816	816	828	840

관 계 법 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 2017. 12. 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27., 2016. 3. 2., 2017. 12. 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 2017. 12. 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